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9,634,389	11,389,032
일반회계	330,066,408	9,901,992
특별회계	49,567,981	1,487,039
공기업특별회계	16,313,273	489,39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313,273	489,398
기타특별회계	33,254,708	997,641
수질개선 특별회계	23,468,847	704,065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18,883	3,566
주택사업 특별회계	3,072,864	92,186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96,959	26,909
자활기금 특별회계	1,805,723	54,17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366,318	70,99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14,454	30,43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79,321	14,380
기반시설 특별회계	31,339	9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29,26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